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복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82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신복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경훈,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박춘선,  
임춘대, 최민규 의원(14  
명)

## 1. 제안이유

- 2024년 1월 「모자보건법」의 산전·산후우울증 지원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뿐만 아니라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으로 지원 내용이 구체화 되었음.
-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 우울감 해소에 배우자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57.8%)을 차지하는 만큼,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 과정을 이해하고 돕도록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내실화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조례는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임산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대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등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임산부의 범위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4조의3).

나. 임신부 교통비 지원의 대상을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  
(안 제4조의4).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의 제목“(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을“(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임산부(「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3.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결혼이민자”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결혼이민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3(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임산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4조의3(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임산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li> <li>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li> <li>3.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li> <li>4.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생략)</p>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1. -----

-----임산부(다문화가족  
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2. (생략)

② ~ ⑦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3호 서울특별  
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생략)

1. -----

-----임산부(다문화가족  
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2. (생략)

② ~ ⑦ (생략)

1. -----

-----임산부(결혼이민  
자의 경우-----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10093호 서울특별  
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임산부(결혼이민  
자의 경우-----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임산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대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것임
- 안 제4조의3(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지원 대상자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임산부 포함”에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안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자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에서 “결혼이민자”로 수정하여 상위법인 「모자보건법」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권 봉 수

☎ 02-2180-7953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